

【 11 】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건립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

제출년월일 2002. 9. //

제 출 자 양 주 군 수

□ 사업목적

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로확보 및 도시화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북부지역의 농산물유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더불어 「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」를 건립코자 함

□ 사업규모

- 위 치 : 양주읍 고읍리 산 62 외 34필지
- 부지면적 : 79,468m²(24,000여평)
- 부지이용안
 - 건축물 및 주차장 : 17,000평
 - 공원 및 휴식공간 : 7,000평
- 건축면적 : 4,500평
- 준공예정 : 2004년

□ 사업비(추정액)

- 총사업비 : 250억원
 - 군 부 담 : 50억원(토지매입 및 부지조성)
 - 농협부담 : 200억원

□ 추진주체

- 양 주 군 : 부지확보 및 조성
- 농협중앙회 : 시설 및 운영

□ 운영방법

-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운영하여 수익분배

□ 근거법령
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

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건립및운영기본협약서추진상황

□ 추진사항

- 2002.04.06 : 유통센터건립검토
농협중앙회 상무 김용택(현 농협대학장)
- 2002.04.09 : 유통센터 예정지 실무팀 검토(1,2,3후보지)
농협중앙회 농업경제기획실장 정동찬외 4인
- 2002.04.19 : 대형농산물판매장 건립협조요청(농협→군청)
부지20,000평이상
- 2002.04.19 : 농산물유통센터설치 신청(군청→농협)
- 2002.05.07 : 유통센터건립 의원 간담회
- 2002.07.16 : 유통센터건립 의원 설명회
- 2002.07.24 : 운영기본협약서 법률자문(고문변호사)
- 2002.07.26 : 군정조정위원회 심의
- 2002.07.26 : 유통센터건립 및 운영기본협약서안 통보(군청→농협)

□ 현재진행사항

- 농협중앙회 : 규모 및 운영방향 검토중
- 군 : 5,000평 규모의 도·소매 겸한 유통센터 건립 요구
-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협약서 “안” 확정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유통센터건립계획 및 운영기본협약서 심의의결(군의회)
- 운영기본협약서 체결
- 부지매입 및 국변등 행정절차 추진
- 양주농산물유통센터건설단 발족 - 농협중앙회

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건립 및 운영기본협약서 안

경기도 양주군수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양주지역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·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기도 양주군 관내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형태) ①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은 갑과 을의 공동투자 방식에 의하며 그 운영은 을이 담당한다.

②갑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를 현물 투자하고 을은 동 부지 위에 건물과 부대시설(물류장비 및 시설, 각종부담금 등)을 구축·취득하여 현물 투자한다.

④투자재산은 투자자의 명의로 한다

제3조(부지확보 및 조성) ①제2조제2항에 의거 갑이 현물 투자하는 부지는 다음과 같다.

소 재 지	면 적	지 목
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고읍리 산62 외 34필지	79,468m ²	전,임야 등

②갑은 제1항에 규정한 부지의 제공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 교통여건, 상권 등 제반입지가 양호한 같은 규모의 다른 부지로 대체 확보하기로 한다.

③갑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 및 이에 따른 각종 행정 인·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현물 투자하기로 한다

제4조(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 및 휴식공간 설치) ①을은 갑이 확보·조성한 부지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다.

②갑은 주민편의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유통센터 주변에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제5조(운영 및 토지사용기간) ①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은 을이 담당하며, 운영수익이 발생시에는 갑과 을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말결산 결과 손실금 발생시에는 을이 부담한다.

②갑이 투자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현물투자 한 날로부터 30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일정) ①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사업착수 : 2002년 9월

2. 준공 및 개장 : 2004년 12월

②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유통센터의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제7조(건립규모 및 매장의 운영) ①유통센터의 건립은 우선 14,876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한 후 지역상권 등 을 감안하여 추가로 증축한다

②을은 도·소매를 병행하여 유통센터를 운영하며, 원스톱 쇼핑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이외에도 생활용품 등 각종 공산품을 취급한다.

③을은 농산물 판매활성화와 쇼핑편의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갑과 협의하여 동부지역에 기타 판매관련 시설을 건립 운영한다.

제8조(상호협력 등) ①갑과 을은 농산물유통센터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인·허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호 협조한다.

②갑은 접근도로 최대 확충 등 농산물유통센터의 제반 입지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.

③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특산품을 우선 판매한다.

제9조(운영협약체결) ①갑과 을은 본 공동투자사업의 원활 한 추진과 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별도 운영협약은 농산물유통센터 개장 이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체결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①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 협약서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력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이상의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02년 월 일

(갑) 양주군수

임 충 빙 (인)

(을) 농협중앙회

농업경제대표이사 노 의 현 (인)

양주농산물유통센터건립및운영기본협약서협의안 대비표

구 분	당초안	농협중앙회 협의안	비 고
전문	<p>경기도 양주군수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<u>농산물 유통개선 및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고자</u> 농산물 유통 센터를 건립·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</p>	<p>경기도 양주군수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<u>공동으로 투자하여 양주지역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·운영하기로</u>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</p>	기본협약 내용의 단순화 세부운영협약시 반영
제2조	<p><u>제2조(사업형태)</u> ①농산물유통 센터의 건립은 갑과 을의 공동투자 방식에 의하며 그 운영은 을이 담당한다.</p> <p>②갑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현물 투자하고 을은 동 부지 위에 건물과 부대시설(<u>물류장비, 기반 시설들 포함</u>)을 구축·취득하여 현물(유통센터 건립에 관련된 각종부담금 등 포함)투자한다.</p> <p>③투자자 비율의 산정은 부지는 준공후 감정평가액으로 하며, 건축물 및 부대 시설등은 투자액으로 한다.</p> <p>④투자재산은 투자자의 명의로 한다.</p>	<p><u>제2조(사업형태)</u> ①농산물유통 센터의 건립은 갑과 을의 공동투자 방식에 의하며 그 운영은 을이 담당한다.</p> <p>②갑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현물 투자하고 을은 동 부지 위에 건물과 부대시설(<u>물류장비 및 시설, 각종부담금 등</u>)을 구축·취득하여 현물 투자한다.</p> <p>③삭제</p> <p>④투자재산은 투자자의 명의로 한다.</p>	<p>②항 자구수정, 단순화</p> <p>③항은 세부운영협약시</p>

제5조	<p>제5조(운영 및 토지사용기간) ①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은 을이 담당하며, 운영수익이 발생시에는 갑과 을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말결산 결과 손실금 발생은 을이 전액 부담하며 담해 회계연도에 결산 체분한다.</p> <p>②갑이 투자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현물투자 한 날로부터 30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모든 채권·채무관계는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자인 을의 책임으로 하며, 을은 투자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3자에게 유통센터 의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</p>	<p>제5조(운영 및 토지사용기간) ①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은 을이 담당하며, 운영수익 발생시에는 갑과 을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말결산 결과 손실금 발생시에는 을이 부담한다.</p> <p>②갑이 투자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현물투자 한 날로부터 30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삭제</p>	<p>①농협회계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자구임</p> <p>②갑이 투자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현물투자 한 날로부터 30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세부운영협약시 반영</p>
제7조	<p>제7조(매장의 형태) ①매장은 도매(직배송)와 소매업을 병행하며 16,530평방미터이상을 건축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한다.</p> <p>②을은 농산물 판매활성화와 쇼핑면의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갑과 협의하여 동부지에 기타 판매장을 건립 운영한다.</p>	<p>제7조(건립규모 및 매장의 운영)</p> <p>①유통센터의 건립은 우선 14,876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한 우 지역상권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증축한다.</p> <p>②을은 도·소매를 병행하여 유통센터를 운영하며, 원스톱 쇼핑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이외에도 생활용품 등 각종 공산품을 취급한다.</p> <p>③을은 농산물 판매활성화와 쇼핑면의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갑과 협의하여 동부지에 기타 판매관련 시설을 건립 운영한다.</p>	<p>①유통센터 규모조정 및 추가증축 명시</p> <p>②항 신설 (취급품목의 제한 배제)</p> <p>③용어정비 (판매장→판매관련시설)</p>

제9조	<p>제9조(회계 및 장부에 관한 열람과 등사) ①갑은 필요한 경우에 회계 및 영업장부에 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응하여 열람 및 등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	삭제	세부 운영협약시 반영
제10조	<p>제10조(사업의 종료 및 양도) ①을은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토지 사용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서 및 운영협약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중지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하여 종료하였을 때와 제5조제2항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부지내의 모든 시설은 갑의 소유로 한다.</p> <p>③위 2항에 의거 을은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에 갑에게 무상양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	삭제	세부 운영협약시 반영

양주농산물유통센터건립 사업내역 안

구 분	추 진 내 역		비 고
	군	농협중앙회	
기 본 협 약 서 내 역	사업형태 - 공동 투자	토지현물투자	건물, 부대시설투자
	부지조성 - 24,000평	부지조성완료하여 현물출자	
	건축물		건축물을구축, 취득하여 현물출자
	사업의 운영		운영수익은 지분율따라 배분
사 업 비 내 역	계	50억	200억
	토지매입	40억	
	건축, 물류장비 및 기타판매시설 등		199억
	부지조성 등	7억	
	설계 (국변, 토목, 환경, 건축)	3억	1(건축)